

## 제2회 재외동포NGO활동가 대회 (2005년 11월 1일 화 ~ 4일 금)

- 주최 : KIN(Korea International Network)
  - 주관 : 제2회재외동포NGO활동가대회추진위원회(10개 단체)  
동북아두레공동체운동, 동북아평화센터, 동북아평화연대,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전남대학교세계한상문화연구원,  
중국동포의집·외국인노동자의집, 중국동포타운신문,  
해외교포문제연구소, 한국청년연합회(KYC),  
KIN(지구촌동포청년연대)
  - 후원 : 재외동포재단,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코리아포커스
1. 내용의 일부 혹은 전체를 인용, 발췌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저자와 출처를 밝혀 주셔야 합니다.
  2. 본 자료는 <http://www.kdemocracy.or.kr/KDFOMS/>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

### 민 주 화 운 동

당신이 만든 우리의 희망입니다

민주주의 발전과 통일한국의 미래.  
대한민국의 저력을 이야기 할 때마다  
민주화운동의 소중한 경험과 정신을  
힘주어 들려주시요.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는  
우리들의 소중한 뜻이 펼쳐지도록  
국민들과 함께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Korea Democracy Foundation  
서울시 중구 정동 34-5 배재정동빌딩 1-3층  
전화 02-3709-7500 팩스 02-3709-7530  
<http://www.kdemocracy.or.kr/>

# 역사나눔1-1

## 사할린 한인문제

이수진 | 사할린주한인이산가족협회 회장

2005년 10월은 한국에서도 잘 알려 몹시 존경하는 유명한 안톤 체호프 러시아 작가가 3개월 동안 사할린섬을 여행한지 115년이 되는 해입니다.

태평양, 대륙의 꼬트머리에 위치하고 있는 이 섬은 그 당시 러시아제국의 유형지로 있으면서 강제노동을 시키는 자리였습니다.

세계는 금년에 독일파시스트와 일본제국주의자와의 승리 60주년을 기념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사할린한인 대다수는 해방을 완벽히 찾지 못했으며 계속 사할린섬은 그들에게 한해서 유형지, 강제징용의 자리로 남아있습니다.

사할린한인들의 조국에 도착하려면 비행기로 3시간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사할린한인들의 선조의 땅 한국은 우리에게 있어서 멀고도 도달할 수 없는 곳으로 남아있습니다. 실지로 <사할린한인문제>는 2차 대전 종말부터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 사할린한인들에게는 명예 및 자존심, 역사 및 정치적 정당성 회복에 관련된 중요한 역사적 문제들이 많습니다. 그들의 숙망으로는 친척 찾기, 이산가족과의 재결합, 영구귀국, 배상 및 기타입니다.

사할린한인들의 자각성이 더욱 더 발휘됨에 따라 사할린에서는 한인사회단체들의 설립되기 시작했습니다. 맨 처음 1989년 6월 22일에 사할린주한인이산가족협회가 조직되었습니다. 오늘 현재 사할린에는 16개의 한인사회단체들의 계산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직까지 사할린한인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으니 그 목적달성을 위해 단체마다 각별히 사업방도를 찾으면서 활동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 참고 : 일본은 한국을 1905년에 점령했으며, 1910년도에 법률상으로 자기영토에 포함시켰으며, 따라서 한국인들은 일본국민으로 되었다.

일본법에 의해 일본국적을 갖게 된 한인들은 1939, 1942, 1944년도에 고된 노동에 파견되었으며 1944년도에는 일본 군사력을 강화하기 위해 사할린에 강제징용 되었습니다. 이외에 바로 그해 3190명의 한인광부들을 도로 사할린에서 일본 탄광들로 강제로 끌고 갔는데 나중에 그 가족도 따라 보내겠다는 약속은 끝내 지키지 않았습니다.

전쟁이 끝난 후 1946년 말부터 1949년까지 소련 통제하에 있게 된 영토에서 일본사람들을 귀환시키게 되었습니다. 50년대 중반 소련-일본관계가 정상화되기 시작해서부터 일본-한국 혼합된 가족들을 일본으로 귀국 시킬 것에 대한 조약이 서명되었습니다. 이전 일본국적을 갖고 있었던 나머지 한인들은 운명의 농락에 맡겨 버린 채로 되었는데 다음 그들은 무국적, 60-70년대에 와서는 고향으로 귀국할 아무런 희망을 잃은 사할린한인들은 소련국적을 내야만 했습니다.

2001년도 사할린한인사회단체들의 요구에 일본외무성은 일본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한반도의 사할린한인귀환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언급했습니다.

1. 1946년 <귀환에 대한 미국-소련 간 협정>에 기초하여 귀환이 실시되었다.

2. 1951년 샌프란시스코평화조약에 기초하여 한인들은 일본국민증을 상실하였다.

이 두가지 이유를 상세히 검토해봅시다. 1946년 <귀환에 대한 미국-소련 간 협정>에는 누가 귀환의 대상으로 되고 있다는 것이 지적되어있습니다.

가. 일본포로병들                      나. 일본국적을 갖고 있는 사람들(희망자들)

이와 관련하여 사할린한인들은 협정에 따라 <일본국적을 갖고 있는>측에 들어가야 합니다. 귀환은 일본정부가 제출한 명단(29만 명 일본인들, 4만 명 한인제외하고)에 의해 일본부담으로 실시되었습니다. 따라서 최초부터 일본은 자기나라 국적을 갖고 있는 한인들에 대한 국가적 책임을 실행하기를 거부했으니 이로하여 1947년 5월 3일부 일본헌법 제14조항을 위반한 것으로 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유를 검토해봅시다.

샌프란시스코조약이 발효되기 시작해서부터 일본사법성은 1952년 4월 29일부 <샌프란시스코평화조약의 발효와 관련하여 한국인과 대만인들의 국적정리와 신분등록에 대한> 제438호의 정령을 발표합니다. 그 정령에는 다음과 같이 서술되어있습니다.

1. 일본영내에서 한국과 대만이 나가기 때문 한국인과 대만인들은 일본국적을 상실하게 된다.

2. 또한 사할린과 쿠릴도 일본영내에서 빠져나오나 이 영토에 상주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무조건 일본국적이 상실되지 말아야한다. 왜냐하면 상주하는 영토가 소련의 관할권에 넘어갔기 때문 재등록 실시가 필요하다.

위에 지적된데 기초하여 일본정부가 사할린한인에 대한 책임을 거부한다는 것은 무근거적인 것이라고 결론지을 수 있습니다.

독일에 비해 일본정부는 정치책임성을 인정하기를 꺼려하며 어떻게 해서든지 이 문제해결을 인도적으로 지원하려고 시도하고 있습니다. 1975년부터 1989년까지 일본에서 <귀환의 요구>란 첫 사할린재판이 열렸습니다. 이 소송사건은 일본이 크나큰 죄를 사할린한인들에게 끼쳤다는 것에 일본사람들의 주목을 돌리게 해주었습니다.

사할린한인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일본국회 하라봄베이의장을 수위로 한 일본국회 120명의 의원(어떤 당에 속하든 관계없이)들로 이루어진 조정위원회를 결성했습니다. 바로 이 조정위원회의 활동, 소련 <페레스트로이카>의 덕분으로 일본에서 사할린 및 한국 친족들과의 쓰라린 만남이 시작되었는데 만나게 해준 모든 비용은 일본측에서 담당해주었습니다. 이같은 만남이 사할린한인 귀환사업의 시초로 되었습니다.

첫 사할린재판은 결정을 내지 못했습니다. 원고의 요구가 재판의 결정없이 실현되었기 때문입니다.

1990년부터 1995년까지 <보상요구>란 두 번째 사할린재판이 있었습니다. 21명이 1000만엔의 총액으로 소송사건을 제출했습니다.

위에 말한 바와 같이 첫 번째 사할린재판은 일본사람들에게 눈을 크게 뜨이게 해주었으나 책임을 지고 있다는 데 대해서는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재판의 나쁜 결과를 미리 두려워한 일본정당은 조정위원회의 협조 하에 1995년 <50주년기념프로젝트>를 작성했습니다.

1. 일본정부는 영주희망자들의 귀환에 대한 모든 비용을 담당하겠다.

2. 일본정부는 영주귀국자(독신자, 노부부, 가족사람)들을 위한 주택건설 및 운영에 대한 비용을 책임지겠다.

3. 일본정부는 귀국자들에게 생계비를 지급해주며 정부가 설정한 펀드를 통해 연금과 일시보조금을 지불해준다.

4. 일본정부는 영주귀국자들과 마찬가지로 사할린에 잔류한 한인들에게도 필요한 대책을 취하고 있다. 예를 들어 사할린잔류한인들에게 일시보조금지급과 문화센터 건설.

5. 기타.

<50주년기념프로젝트>가 거의 우리 요구에 준했기 때문에 재판심리를 중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 후 이미 10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나 일본정부는 그 약속을 지키지 않았으며 우리는 속아 넘어간 셈으로 되었습니다. 여기에 우리의 잘못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50주년기념프로젝트>실행을 통제해야 했으며 그리고 제때에 그 실행여부에 대해 일본측에 상기시켜주어야 했습니다.

한편 사할린주에서는 한인사회단체들이 많이 활동하고 있는데 서로 분리된 상황에 있으니 그 사회단체들의 사업을 조정시킬 수 있는 그런 연합회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사할린한인>이란 지역사회단체(2001년 4월 1일 등록되었음)는 연합회(위청자로 되고 있음)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데 이전과 같이 러시아연방 <사회단체에 대한>법을 위반하면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사회단체로 되고 있는 주한인협회는 아무런 문서로도 확인되지 않은 연합회의 역할을 들면서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 행정부, 한국 및 일본정부 일부 구조들과 사회단체들은 다른 여러 사할린한인단체들의 목적과 과업을 무시하면서 사할린주한인협회 단 하나의 단체에만 지지하며 그에 기울어져 귀담아 듣고 있습니다. 이것은 러시아연방 내부에 간섭하는 것과 다름이 아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사할린주한인협회는 조성된 상황을 자기 단체의 관심으로만 능하게 이용하고 있습니다.

결과 오늘 사할린에서 한인사회단체들의 활동이 문란상태에 처해있습니다. 이미 1995년에 일본은 사할린한인들의 일치한 의견만 들어주겠다고 경고한 바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사할린주한인협회는 일본인들의 고집에 응하고 있으면서 모든 사회단체들과 단합해 사업할 대신 오리려 계속 분열시키며 따라서 동포들에게 해를 끼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방면에서 한국 일부 국가 구조들과 단체들도 계속 주한인협회를 지지하고 있는데 그 이유를 우리가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시 반복해서 우리 사할린한인들에게 한해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영주귀국 및 보상이며 여러 저금과 보험액을 돌려받는데 있습니다.

일본의 <강철같은> 고집을 감안해 우리는 이것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오직 소송사건으로 일본이 사할린한인들에 끼친 정치적 죄를 인정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일본자체가 작성한 <50주년기념프로젝트>의 무조건 완성, 영주귀국희망자들의 수가 지금 3500명에 달하고 있으니 가족들과 함께 귀국시키도록 <파일럿 프로젝트>에 의해 계속 주택을 건설해 주기를 주장하겠습니다. 지금 영주귀국희망자들은 안산에 언제 노인들이 죽고 주택이 비어지겠는가 하면서 차레를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특히 지적하고 싶은 것은 부모들을 일찍 여윈 사할린한인2세(1945년 8월 15일 이후 출생)들에게도 1세노인들과 같은 혜택을 제공해주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광복절 60주년에 제하여 금년 7월에 한국 한명숙 국회의원을 수위로 한 대표단이 우리 사할린을 방문하여 여러 구역들을 순방하고 한인동포들과 만나 기탄없는 이야기를 나누고 돌아왔습니다. 결과 가까운 시일 내로 한국국회에서 <사할린한인에 대한>법안이 토의될 것입니다. 우리, 사할린한인들은 이 같은 역사적 사변이 이루어질 것을 큰 기대를 품고 손꼽아

기다리고 있습니다.

물론, 오늘 이 자리를 빛내시고 있는 여러분들 NGO 열성자들, 한국정부의 도움이 없이는 안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의 협조를 기다리며 믿겠습니다.

2005년 10월 24일  
사할린이산가족협회 이수진